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77

발의연월일: 2024. 9. 19.

발 의 자:이강일·정성호·김남희

박희승 • 이성윤 • 김우영

이기헌 · 김남근 · 허 영

천하람 • 황운하 • 임미애

강득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열람, 전송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의 요구(이하 "열람등요구"라 함)를 문서 등으로 대리인이 할 수있도록 하면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아동에 대한 범죄 주체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소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,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가제한되거나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.

이에 법정대리인이 그의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 동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38조제2항 단서 신설). 법률 제 호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정대리인이 그 법정대리 아동에 대한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	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		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		
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	2		
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			
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			
구를 할 수 있다. <u><단서 신설></u>			
	인이 그 법정대리 아동에 대한		
	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		
	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5호에		
	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		
	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		
	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		
	「아동복지법」 제45조에 따른		
	<u>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대통</u>		
	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		
	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		
	<u>할 수 있다.</u>	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	